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 ②“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내 도로에 적용한다.

**제4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교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 관리책임자의 의무)**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2.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 제2장 등록 및 운행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대학 구성원으로 한정한다)는 운행 전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의 관련부서에 등록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전용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도로 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할 때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때 도로의 통행은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 1.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 2. 자전거 전용도로의 파손,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3.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4.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 표지에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는는 아니 된다.

**제8조(속도 제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15km/h 이하로 한다.

**제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기타(이하“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르는 경우 및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는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행자의 보호)**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주차

**제11조(주차 장소)** ①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대학 구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륜차(자전거, 오토바이 등) 거치 장소의 공간 등을 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12조(주차의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없다.

1. 교차로·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m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건물 출입구
8.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9. 도로, 보도, 테라스,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
10.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1.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3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동장치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장치를 압수할 수 있다.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또한 부담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관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반환요구 시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대학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대학회계로 세입조치 한다.

**제14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제1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 제4장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제15조(음주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6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7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난폭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피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안전운전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가 운행할 것
2. 교내 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3. 포트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4.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5.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날 때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 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8.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9.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 10.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도 고려할 것
- 11.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 12.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재료나 반사조명을 부착할 것
- 13. 개인형 이동장치를 건물 내로 반입하지 말 것
- 14. 대학의 전기시설을 이용하여 임의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하지 말 것
- 15. 그 밖에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 ② 제 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대학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운전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제20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1. 신규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2. 정기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다.

**제5장 안전사고**

**제21조(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① 교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정도,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안전사고 보고서 및 안전사고 진술서 등을 작성·징구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사고의 조사)**①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 1. 사고 발생 일시
- 2. 사고 발생 장소
- 3. 피해 상황(사망자수, 부상자수, 재산피해 규모)
- 4. 사고 신고 사유
- 5. 사고 발생 경위
- 6. 신고자(소속, 성명, 연락처)

7. 사고당사자(소속, 성명, 연락처)

**제23조(위험방지 조치)** ① 대학의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협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투어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법률 제178891호 도로교통법 시행일인 2021년 5월 1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